

쿠팡이츠 서비스 이용약관 및 부속약관(사업자용)

개정 신규대조표

(2020.8.1. 시행)

개정되는 쿠팡이츠 이용 약관(사업자용)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(개정약관조항 순서기준)

개정 전	개정 후
■ 공통사항_서비스명 변경	
쿠페이	쿠팡페이 *표준약관 및 부속약관상 서비스명인 쿠페이를 쿠팡페이로 전부 변경합니다.
■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약관 - 사업자용	
제2조 (정의) 10. “ <u>쿠페이</u> ”란 고객이 쿠팡이츠 이용 시 선택하는 지불방법으로, <u>회사가</u> 제공하는 모든 전자적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. 12. “ <u>쿠팡캐시 등</u> ”이란 <u>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고객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 범위의 금원을 충전시켜 생성시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.</u>	제2조 (정의) 10. “ <u>쿠팡페이</u> ”란 고객이 쿠팡이츠 이용 시 선택하는 지불방법으로, <u>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쿠팡페이(취)</u> 가 제공하는 모든 전자적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. 12. <u>(삭제)</u>
제3조 (본 약관의 게시, 유효성 및 개정) ④ 회사가 본 약관(이용정책을 포함하며,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)을 개정하는 경우, 모든 개정 조항은 본 약관의 현재 버전 및 개정안의 발효일, 개정이유와 함께 발효일 7일 전부터(단, 수정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<u>14일</u>) 발효일 직전일까지 쿠팡이츠,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게시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통지되어야 합니다.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본 약관의 개정안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면서 판매자에게 7일(판매자에게 불리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<u>14일</u>)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리거나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판매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본 약관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	제3조 (본 약관의 게시, 유효성 및 개정) ④ 회사가 본 약관(이용정책을 포함하며,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)을 개정하는 경우, 모든 개정 조항은 본 약관의 현재 버전 및 개정안의 발효일, 개정이유와 함께 발효일 7일 전부터(단, 수정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<u>30일</u>) 발효일 직전일까지 쿠팡이츠,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에 게시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통지되어야 합니다.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본 약관의 개정안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면서 판매자에게 7일(판매자에게 불리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<u>30일</u>)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리거나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판매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본 약관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⑦ (신설)	<u>⑦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이용자는 회사 또는 쿠팡페이 주식회사(이하 “쿠팡페이”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(PG), 에스프로 및</u>

<p>⑧ (신설)</p>	<p><u>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, 관리 서비스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</u></p> <p>⑧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이 약관의 내용 중 쿠팡페이를 이용한 업무의 처리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 따른 계약관계(관련 권리 및 의무 포함)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,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용자가 이에 대하여 30일간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. 이용자가 본 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항에 따른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언제라도 이 약관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에도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지급채무 등 기본적인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</p>
<p>제11조 (대금 정산 및 유예) ① (신설)</p>	<p>제11조 (대금 정산 및 유예)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내용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, 결제대금예치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쿠팡페이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단, 해당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내용 이 외에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채무 등 기본적인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</p>
<p>④</p> <p>6. 상기 제3항에 따라 판매자가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또는 분쟁으로 인해 환불, 교환, 청구, 신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</p> <p>7.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⑤ 회사는 상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그 취지 및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판매자는 통지 후 2</p>	<p>⑤</p> <p>6. 상기 제4항에 따라 판매자가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또는 분쟁으로 인해 환불, 교환, 청구, 신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</p> <p>7.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⑥ 회사는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그 취지 및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판매자는 통지 후 2</p>

<p>일 이내에 회사에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⑥ 판매자가 제5항의 통지로부터 2일 이내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설명자료의 내용이 판매자의 합법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사는 해당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상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일 이내에 회사에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⑦ 판매자가 제6항의 통지로부터 2일 이내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설명자료의 내용이 판매자의 합법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사는 해당 원인이 소멸될 때까지 상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</p>
<p>[부칙] 본 약관은 <u>2019년 04월 22일</u>부터 시행됩니다.</p>	<p>[부칙] 본 약관은 <u>2020년 08월 01일</u>부터 시행됩니다.</p>

<p>■ 쿠팡이츠 서비스 부속 약관</p>	<p>■ 쿠팡이츠 서비스 쿠팡페이 부속약관</p>
<p>제1조 (목적) ② (신설)</p>	<p>제1조 (목적) ② <u>본 부속약관은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라 회사가 쿠팡페이(주)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대금정산업무 등 전자금융서비스 등에 한정해서 그 효력이 있으며, 해당 업무의 처리방식 이 외에 표준약관에 따른 회사와 판매자간에 기본적인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</u></p>
<p>제2조 (쿠페이의 종류 및 이용방법) ① 표준약관 제10조에 따라 <u>회사가</u>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쿠페이의 종류 및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	<p>제2조 (쿠팡페이 <u>서비스</u>의 종류 및 이용방법) ① 표준약관 제10조에 따라 <u>회사가 쿠팡페이(주) (이하 회사와 쿠팡페이(주)를 통칭하여 “회사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</u>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쿠팡페이의 <u>서비스</u>의 종류 및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
<p>[부칙] 본 부속약관은 <u>2019년 4월 22일</u>부터 시행됩니다.</p>	<p>[부칙] 본 부속약관은 <u>2020년 08월 01일</u>부터 시행됩니다.</p>